

사회법감시

Justice Watch Newsletter Vol.22

불법정치자금 재판에서 본

“화이트칼라 범죄”

선고형량 및 양형사유 비판

사법감시시

22호

- 1 발간사
- 2 실행선고받을 걱정없는 정치인과 '사회지도층'
불법정치자금 정치인 재판결과 및 양형사유 분석결과
- 5 조사대상사건 재판의 기본현황
- 6 조사대상사건 재판 23건의 선고형량 및 형량변화
- 8 법원은 선처사유 제조기? 선처사유 千態萬象
- 10 눈에 띄는 잘못된 선처사유 3대 유형
- 13 조사대상 23건의 담당재판부와 선고형량
- 자료. 23건의 판결문에 기록된 '양형사유' 전문**
- 14 2심까지 진행된 사건 12건
- 23 1심까지 진행된 사건 11건



‘사법감시 제22호’를 발행하며

‘사법감시’지의 성격을 ‘이슈보고서’로 변화한 후 두 번째 호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호는 불법정치자금 정치인 재판결과를 검토하고, 이 판결에서 제시된 양형사유를 분석하였습니다.

현행 법체제 아래에서 양형은 법관의 고유권한이며, 양형판단은 각 사건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법관의 합리적 판단에 따라 사건별로 달리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재량에도 ‘내재적 한계’가 존재한다고 봅니다. 사건마다 내려지는 양형이 합리적 근거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실증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지만, 시민들의 시각에서는 법관의 선고형량에 일정한 ‘편향’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편향’은 거액의 불법정치자금이나 뇌물을 받은 정치인이나 공무원,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사람들에 대한 재판에 특히 부각됩니다. 이러한 ‘화이트 칼라 범죄’에 대하여 법원은 당해 범죄의 불법의 중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다”는 점 등을 이유로 상당히 관대한 양형을 내려왔습니다. 이에 비하면 절도 등 ‘블루 칼라 범죄’에 대하여 내려지는 양형은 상대적으로 높다고 보입니다. 최근 증여세 포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월이 선고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채용씨에게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나, 자신이 범행을 하러 간 집의 사정이 너무 딱하여 자신을 돈을 주고 돌아 나온 절도범에게는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러한 양형의 차이 뒤에 있는 법적인 근거를 떠나, 시민들의 눈에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논리가 양형에서도 관철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화이트 칼라 범죄’에 대해서는 무조건 형이 높아야 한다던가, ‘블루 칼라 범죄’에 대해서는 무조건 형이 낮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상적으로 보이는 양형차이에 대하여 법원은 구체적인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법원이 ‘화이트 칼라 범죄’가 초래하는 사회적 유해성에 대한 보다 심각하게 고민할 것을 희망합니다.

법원에 대한 시민의 신뢰는 유무죄에 대한 판단만이 아니라 양형과 그 근거에 의해서도 좌우됨을 법원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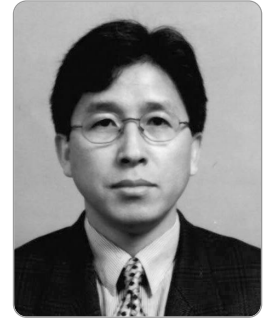
사법감시센터의 시야는 아직 좁고, 역량은 아직 일천합니다. 사법개혁을 바라는 많은 분들의 성원과 격려, 그리고 질책을 고대합니다.

조 국 사법감시센터 소장, 서울대 교수.

실형선고받을

걱정없는 정치인과

‘사회지도층’



하 태 훈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고려대 법학과 교수

I 참으로 허망하고도 허망할 뿐이다. 송광수 검찰총장-안대희 중수부장 콤비를 박수치고 달래가며 기소까지 했지만, 돌아온 것은 겨우 벌금형 아니면 집행유예다. 정치인이나 기업인에 대해서는 수사도 어렵사리 착수되고,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기소단계에서는 머뭇거리고, 설사 공소가 제기되더라도 유죄판결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고, 유죄라 하더라도 실형은 더 더욱 어렵고, 실형이 선고되어 집행되더라도 금세 사면의 은사를 받으니 겹겹이 특혜를 받는 것이 우리의 부끄러운 사실상이다.

불법정치자금관련 정치인에 대한 재판결과를 보면 이것이 조금도 부풀리지 않은 실상임을 금방 알 수 있다. 정치인 17명 중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각각 58%(10명)과 18%(3명)이고 실형은 4명으로 겨우 24%뿐이다. 4명에 1명만 실형을 사는 것이다. 기업인은 더 하다.

재판부는 별의 별 사유로 감형하더니 형집행을 유예할 특별한 사유도 나열하지 않고 은전을 베풀었다. 처음에는 중한 처벌을 면키 어렵다고 엄히 혼내는 척하다가 참작할 정상이 무엇인지도 밝히지 않고 그냥 용두사미로 끝낸 사건이 한둘이 아니다. 그러니 법원은 ‘선처사유 제조기’, 아니면 ‘고무줄 양형’이라는 비아냥거림을 들어야 하는 것이다. 어느 국회의원의 냉소처럼 과연 ‘만인’에게 평등한 법 적용이었는지, 아니면 ‘만 명’에게만 평등하고 정의로운 법원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II 양형은 감(感)으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 과학적이어야 하는가. 법원도 끊임없이 양형의 ‘합리화’를 말하는 것을 보

면 감에 가까웠던 그동안의 양형실무에 대한 성찰의 결과일 것이고, 양형과정이 이성적이어야 함을 말하는 것이리라. 그렇다. 이제 더 이상 양형은 법관의 고유한 권한이며 재량에 속하는 것이어서 법관 개개인의 능력, 양심과 세계관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제재수단의 종류와 양을 정하는 과정은 법적으로 구속된 결정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양형은 법적용이기 때문이다.

법원은 일찍이 양형의 적정성과 형평성을 꾀하기 위해서는 양형이 분석적이고 체계적이어야 한다고 인식하면서 양형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왜냐하면 법관은 형사사법 정의의 실현이라는 자신의 임무를 양형을 통해서 과시할 수 있기 때문에 형의 양정에도 법관의 심판자적 임무가 놓여 있게 되고 여기에서 법관의 양심이 확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형사재판의 무죄 선고율이 1%도 채 되지 않는 현실에서는 피고인들도 유무죄보다는 오히려 형벌의 종류와 양에 더 관심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이는 피고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이나 자신의 장래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양형은 피고인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지금의 사법 불신은 전관예우를 통한 유전무죄?무전유죄현상, 양형의 지역간 불균형과 법관 개인편차, 고위공직자 등 화이트칼라의 반사회적 범죄행위에 대한 관대하고도 솜방망이 같은 처벌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사실 그동안의 양형실무는 법관의 개인적 직관과 당해 사건의 전체적 인상에 따르거나 선형자에게 문의하거나 종전 판결

례를 찾아 비교하는 방법과 같은 전통과 경험이라는 법률외적인 사실적 비교자료에 의존함으로써 양형의 획일화와 법관개인의 편차 및 자의성이라는 문제점을 야기하였다. 일반인의 법감정에 맞지 않는 관대한 형이 선고되고, 애매할 경우 처단형의 기준을 법정형의 최하한으로 맞추고 형량을 더 낮출 필요가 있으면 특별한 검토 없이 작량 감경하여 사건의 유형별로 비슷한 낮은 수준으로 수렴되는 등 법원의 온정주의적 태도 및 양형의 하향평준화 경향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III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정치자금법상의 불법정치자금수수와 특가법상의 뇌물죄에 관련된 기업인과 정치인 내지 고위공직자에 대한 판결이다. 법원은 결코 의도된 편향성이 아니라 강변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국민들은 이와 같이 정치인이나 기업인, 고위공직자가 관련된 범죄유형인 뇌물죄나 선거법위반의 경우에 분명 자신들이 흔히 범할 수 있는 범죄와는 다른 편향이 있음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물론 국민이 다 옳은 것도 아니고 판결의 당부와 양형의 적정성에 관해서 국민투표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지만, 국민 대다수가 편향되어 있음을 말한다면 법원은 판결의 자기완결성만으로 이를 반박할 수 없을 것이다.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는 판결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법리적으로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정치자금법 위반사건에서의 처벌이 불공평하다거나 양형편차가 있다는 것은 아니다. 거의 대부분 공평하게 선처를 받았기 때문에 적어도 그들 사이의 불공평과 편차는 없다. 그렇다고 선고형량이 많고 적음을 탓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 범죄유형의 적정 법정형과 그 범위 내에서의 선고형량이 어느 정도여야 적절한 것인지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는지, 다른 범죄유형의 경우에도 형집행의 유예를 받기 쉬운 것인지, 항소심에서 감형된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등등을 확인하고 검증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IV 2004년판 '사법연감'을 토대로 본 일반범죄의 집행유예비율은 개략적으로 전체 유죄선고를 받은 자의 60%정도인데 반해서 공무원범죄(형법범)는 80%선이다. 그리고 고액의 뇌물죄가 들어있는 특가법의 경우는 다른 중대한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서 30%에 불과한데 반해 이번 불법정치자금 정치인과 기업인의 경우에는 거의 가 다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정치인의 경우는 앞에서 언급한 수치가 보여주고 있고, 정치자금법위반만으로 기소된 기업인의 경우도 그러하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조사한 지난 불법대선자금 수사결과로 기소된 기업인 17명중 4명은 벌금형이었고, 13명이 징역 8월에서 2년6개월 사이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이들 13명 모두 형집행을 유예 받았다. 그리고 벌금형을 받은 4명중 2명도 1심에서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형집행을 유예받은 이들이다. 한마디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더라도 100%가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공무원범죄수준보다 더 높다.

물론 집행유예 비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의 요건과 사유만 갖추어졌다면 이를 비판하는 것은 배 아프고 뒤틀린 심사의 표출에 지나지 않는다고 흘려버릴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집행유예의 사유가 충분하지 않았거나 언급조차 없었다는 점이다. 형집행을 유예하려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형량을 낮추는데 끌어들었던 사유로만 집행유예를 선고해서는 안 된다.

집행유예를 선고하려면 일반 예방적 관점에서 형집행의 필요성이 없고 특별 예방적 관점에서 형벌완화가 요구되어야 한다. 집행유예를 선고하기 위한 특별한 사정은 선고형이 높으면 높을수록 중요한 사정이어야 한다. 고령이나 건강상태로 인하여 책임능력이 저하되었음이 인정된다면 감경사유로 고려되지만 이는 오히려 집행유예사유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나 판결문을 보면 감경적 양형사유인지, 아니면 집행유예 사유인지 분간도 없다. 마지못해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하는 척하는 정치인이나 기업인은 집행유예에 적합치 않다. 그런 범죄자는 형벌감수성이 높으니 단기라도 자유박탈과 제한의 고통을 맛보아야 한다. 그들은 교도소 내에서 범죄를 학습할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단기자유형의 폐해도 없을 것이므로 단기자유형에 적합하다. 법질서의 수호를 위해서도 실형이 요구된다. 그래야만 정치자금법이 살아있음을 기업인이나 정치인에게 보여주어 범죄예방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V 다음으로 지적해야 할 점은 항소심 판결의 무성의와 무책임성이다.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정치인관련 12건 중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로 감형된 경우가 4건, 양형부당을 인정하여 감형된 경우가 5건, 다른 사건이 추가되었음에도 감형한 사건이 1건이며 1심의 판결 선고를 유지한 사건은 2건이다. 이로써 항소만 하면 깎인다는 속설이 입증된 셈이다.

물론 항소심에서의 깎아주기가 무조건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야말로 사실인정의 잘못이 밝혀져 뇌물액수가 줄었다든지, 여러 공소사실 중 일부가 무죄로 인정되었다든지 등등의 경우에는 정당한 감형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항소심 판결문을 보면 그냥 깎아주고 싶은 마음에 어디 사유가 없나를 눈씻고 찾아봐준 친절함이 배어있는 것 같다.

예컨대 수수한 불법정치자금 562억 원 중에서 15억 원을 잘못 인정했다며 무려 2년이 감형되고 추징금도 14억 원이나 깎아준 사례(서정우)나,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10억 받았으나 적극적으로 자금제공을 요청한 것이라는 1심 판결부분을 파기하면서 징역 1년을 벌금 3천만 원으로 형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이재정)도 있다. 심지어는 유죄부분과 위반법률조항이 늘었음에도 감형사유를 언급하지 않고 1년을 감형한 사건(정대철)도 있다. 개인의 이익을 위한 정치자금 수수가 아니라는 이유(최돈웅), 선거대책본부장이라는 직책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담했다는 이유(김영일), 친밀한 관계이거나 친구가 주는 돈이라서 거절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이유(신경식, 신상우)나 이회창 후보가 당선되어야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는 신념에서 대선자금을 받았다는 이유(서정우) 등등은 아무리 보아도 정치인 사건이 아닌 다른 사건이었다면 재판부의 눈에 띄지 않았을 감형사유로 보인다.

돈 안 드는 선거, 공명선거를 갈망하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불법자금을 끌어들어서라도 이겨보겠다는 야당의 사무총장이나 선거대책본부장의 이기적 목적이 어찌 시대상황으로 둔갑하여 감경적 양형사유가 될 수 있는가. 불법자금을 사후에 반환한 결과야 그렇다 치고 반환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 등 자발성여부를 따지지도 않고 감형이나 집행유예사유가 될 수 있는가. 국회의원, 변호사, 전문경영인 등 직업이나 사회적 환경은 오히려 강한 책임의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감경적 양형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닌가. 뇌물죄처럼 초범일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도 그런 사유를 일률적으로 감형이나 집행유예사유로 고려되어야 하는지 등등 의문투성이다.

VI 이런 재판결과를 지켜 본 정치인이나 기업인들은, 수사 착수를 머뭇거리나 마지못해 시작한 수사라도 정치적 부담을 지지 않으려고 불공정하거나 면죄부를 주는 수사로 끝이 나고 법원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전례가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했을 것이기 때문에 음습한 거래의 달콤함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운 좋게 수사와 처벌의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면, 이제 몇몇치 못한 관행에서 벗어나야지 하는 다짐도 순간이 되고, 심지어 자신들의 행위가 불법이 아닌 것으로 착각하거나 앞으로는 좀 더 교묘하게 비자금을 조성하고 돈세탁도 철저히 하는 완전범죄의 유혹을 떨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번 재판결과는 양형합리화를 위한 다각적인 제도도입(예컨대 판결전 조사제도, 양형기준제 및 양형정보시스템 등)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보여준 것이다. 항소심이 구체적인 사건의 양형에 대한 시정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판결서에 범죄의 정상(情狀)이나 양형의 이유를 명시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 양형과정과 양형결과에 대한 사후 심사가 가능해진다.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 원심의 양형부당을 인정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양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시(說示)하도록 해야 한다.

법원은 법질서를 방위하고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과감하게 단기자유형을 선고하고 집행하여 형벌의 적극적 일반예방의 효과를 꾀해야 한다.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의 남용은 법의 효력에 대한 불신을 키우며 사법정의에 대한 믿음을 깨뜨린다. 집행유예제도도 일부 형을 집행하고 나머지를 유예할 수 있는 제도로 바꾸어야 한다. 사법부는 책무를 다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와 관행을 타할 것이 아니라 이를 과감히 고쳐나가야 한다.

불법정치자금 정치인 재판결과 및 양형사유 분석결과



조사대상사건

재판의 기본현황 (2004. 10. 25 현재)

조사대상 불법정치자금 관련 사건 : 총 23건

적용법규별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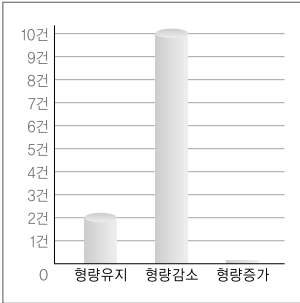
- 정치자금법 위반 : 14건
피고인 : 김영일, 김원길, 김종필, 서청원, 신경식, 신계륜, 신상우, 안희정, 여택수, 이광재, 이상수, 이재정, 최돈웅, 이한동
- 정치자금법 및 범죄수익은닉처벌법 위반 : 3건
피고인 : 박병운, 박상규, 서정우
- 정치자금법, 범죄수익은닉처벌법 및 형법(업무상횡령) 위반 : 1건
피고인 : 최도술
- 특가법(알선수재) 위반 : 1건
피고인 : 박명환
- 특가법(뇌물) 위반 : 2건
피고인 : 박주선, 박주천
- 특가법(뇌물), 특가법(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 1건
피고인 : 정대철
- 특가법(뇌물), 정치자금법 및 형법(상습도박, 제3자뇌물수수) 위반 : 1건
피고인 : 송영진

심급진행별 재판현황

- 1심종결 후 확정된 사건 : 4건
김원길(2004고합519), 김종필(2004고합601), 신상우(2004고합451), 이한동(2004고합655)
- 1심종결 후 2심진행중인 사건 : 7건
박병운(2004노2405), 박상규(2004노1244), 박주선(2004노781), 서청원(2004노2378), 송영진(2004노2206), 신계륜(2004노1609), 이광재(2004노2090)
- 2심종결후 확정된 사건 : 5건
박명환(2004노772), 신경식(2004노897), 여택수(2004노1118), 이재정(2004노746), 최돈웅(2004노1400)
- 2심종결후 3심진행중인 사건 : 7건
김영일(2004도5494), 박주천(2004도5746), 서정우(2004도5652), 안희정(2004도6647), 이상수(2004도4704), 정대철(2004도6940), 최도술(2004도5655)



조사대상사건 재판 23건의 선고형량 및 형량변화



1. 1심과 2심의 선고형량 변화여부

- **형량유지** : 2건
(박주천 - 피고항소기각, 신경식 - 검사의 양형부당주장 항소기각)
- **형량감소** : 10건
- **형량증가** : 0건

- ▶ 1심에 비해 2심에서 선고형량이 감소한 사건은 2심까지 진행된 사건 12건중 10건에 해당함.
- ▶ 그중 5건은 피고측의 양형부당주장만으로 형량이 줄어든 경우이며 5건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중의 일부가 파기되면서 형량이 줄어든 경우임
- ▶ 하지만 범죄사실중 일부가 파기된 5건중 안희정사건을 제외한 4건의 경우는 전체 범죄규모중 적은 부분만이 파기된 것으로, 형량을 대폭 감소하는 주된 이유가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음(아래 2. 참고)
- ▶ 1심 형량이 2심에서도 유지된 2건의 경우, 1건은 적용법조항의 최저형을 1심에서 선고받은 상태에서 사실오인 등을 주장하며 피고가 항소한 것이고, 다른 1건의 경우는 검사가 1심 선고형량이 낮다는 이유로 항소한 것이었으므로, 형량이 감소된 여타 10건의 재판과 대조되는 재판으로 보기에는 적절치 않은 요소가 있음
- ▶ 그리고 1건(피고인 : 정대철)의 경우 2심에서는 1심에서 다루지 않았던 다른 사건이 병합되면서 위반법조항 및 범죄규모가 증가(알선수세 1천만원)하여 추징금이 늘어났으나 징역형량은 오히려 감소하였음

2. 2심재판부가 1심형량을 감형한 사유별 분류

▶ 피고의 양형부당 주장에 따른 2심 감형(4건) :

- **김영일 사건** : 서울고법 형사4부 판사 이호원(재판장), 김용관, 김경호 (1심) 징역3년6월, 추징금11억516만원 → (2심) 징역2년, 추징금 11억516만원
- **박명환 사건** : 서울고법 형사2부 판사 전수안(재판장), 이법균, 심우용 (1심) 징역3년, 추징금6천만원 → (2심) 징역3년, 집행유예4년, 추징금6천만원
- **여택수 사건** : 서울고법 형사1부 판사 이주홍(재판장), 배호근, 임동규 (1심) 징역1년 → (2심) 징역1년, 집행유예2년
- **최돈웅 사건** : 서울고법 형사8부 판사 김치중(재판장), 조휴욱, 황현찬 (1심) 징역3년 → (2심) 징역1년

▶ 피고의 사실관계 및 법리오해주장에 따른 감형(5건) :

- **서정우 사건** : 서울고법 형사6부 판사 김용균(재판장), 오준근, 김하늘 (1심) 징역4년, 추징금15억원, 몰수3억원 → (2심) 징역2년, 추징금1억원
(정치자금법을 어기며 562억원을 받았다는 공소내용을 인정한 1심판결은 인정하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하며 대우건설로부터 15억원을 받았다는 공소내용을 인정한 1심판결부분은 파기함)
- **안희정 사건** : 서울고법 형사8부 판사 김치중(재판장), 조휴욱, 황현찬 (1심) 징역2년6월, 추징금12억1천만원, 몰수1억원 → (2심) 징역1년, 추징금4억9천만원
(정치자금법을 어기며 51억6,500만원을 받았다는 공소내용을 인정한 1심판결은 인정하나, 정치자금법을 어기며 성명불상의 지인으로부터 21억9천만원을 받았다는 공소내용을 인정한 1심판결부분은 파기함)

- 이상수 사건 : 서울고법 형사3부 판사 신영철(재판장), 김수일, 정창호 (1심) 징역1년 → (2심) 징역1년, 집행유예3년
(정치자금법을 어기며 26억원을 받았으며, 회계를 허위보고했다는 공소내용을 인정한 1심판결은 인정하나, 정치자금법을 어기며 현대차그룹으로부터 6억6천만원을 받았다는 공소내용을 인정한 1심판결 부분은 파기함)
- 이재정 사건 : 서울고법 형사3부 판사 신영철(재판장), 김수일, 정창호 (1심) 징역1년, 집행유예3년 → (2심) 벌금3천만원
(정치자금법을 어기며 10억원을 받았다는 공소내용을 인정한 1심판결은 인정하나, 자금제공을 요청한 것이라는 1심판결부분을 파기함)
- 최도술 사건 : 서울고법 형사5부 판사 이홍권(재판장), 박평균, 조용현 (1심) 징역2년, 추징금16억1,446만원, 몰수3억원 → (2심) 징역1년6월, 추징금15억5,946만원, 몰수3억원
(정치자금법을 어기며 19억9천여만을 받았으며 범죄수익을 은닉

하고 횡령했다는 공소내용을 인정한 1심판결은 인정하나, 정치자금법을 어기며 이영로에게서 3억원을 받았다는 공소내용을 인정한 1심판결 부분은 파기함)

※ 이재정 2심사건 판결문은 공소장 변경 등에 따른 직권파기로 1심판결을 부인하였으나 실질적 내용의 측면에서 사실오인에 따른 파기로 분류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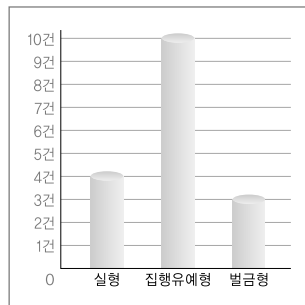
▶ 1심에 비해 유죄부분 및 위반법률조항이 늘어났으나 1심에 비해 감형사유 설명없이 감형된 사례(1건) :

• 정대철 사건 : 서울고법 형사1부 판사 이주홍(재판장), 배호근, 임동규 (1심) 징역6년, 추징금4억원 → (2심) 징역5년, 추징금4억1천만원

3. 특가법 적용 제외 불법정치자금 관련 사건 17건의 선고형량

■ 선고형량별 사건

- 실형 : 4건
(피고인 : 김영일, 서정우, 안희정, 최돈웅)
- 집행유예형 : 10건
(피고인 : 김원길, 김종필, 박상규, 서청원, 신경식, 신계륜, 신상우, 여택수, 이상수, 이한동)
- 벌금형 : 3건
(피고인 : 박병윤, 이광재, 이재정)



▶ 법정형량이 무거운 특가법상의 알선수재나 형법상의 업무상횡령이 아닌, 순수한 정치자금법 위반 및 그에 부속되는 범죄수익은닉처벌법 위반죄가 적용된 17건의 사건의 선고형량(2심까지 진행된 사건은 2심재판 결과 반영)

▶ 17건중 실형이 선고된 것은 4건, 집유나 벌금형이 선고된 것은 13건 (77%)



법원은 선처사유 제조기?

선처사유 千態萬象

- 법원은 세상 모든 것을 선처사유로 만드는 ‘마이다스의 손’
- 어떤 것이든 선처의 사유가 될 정도로 갖가지 이유로 선처를 해주고 있는데, 재판부가 선처사유를 남발함으로써 선처사유를 5~6가지씩 갖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

千態萬象 선처사유 ‘가에서 하까지’ (주요 사례)

가) 하기 싫은 일이었지만 직책때문에 한 것이니 선처...

- “거대 야당의 사무총장 및 선거대책본부장이라는 직책을 맡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이대경(재판장), 임은하, 장성훈 : 김영일 1심)
- “당시 당 재정위원장으로서는 자신의 직책상 선거대책본부장인 김영일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범행에 가담...”(서울고법 형사8부 김치중(재판장), 조휴욱, 황현찬 : 최돈웅 2심)

나) 조직을 위해 나서다 벌인 일이니 선처...

- “불법정치자금을 자신의 개인적 용도나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는 전혀 사용한 바 없이 전부 그대로 한나라당에 전달하여 한나라당이 이를 대선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하게 한 것인 점...”(서울고법 형사6부 김용균(재판장), 오준근, 김하늘 : 서정우 2심)
-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정치자금을 수수하거나 유용하지 아니한 점...”(서울고법 형사8부 김치중(재판장), 조휴욱, 황현찬 : 최돈웅 2심)

다) 그동안 국가에 기여한 것이 있다고 하니 선처...

- “국회의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으로서 국가에

헌신해 왔다고 보이는 점...”(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김문석(재판장), 박연주, 조기열 : 박상규 1심)

- “수십년간 공직 및 의원직을 성실히 수행하여 온 경력...”(서울고법 형사4부 이호원(재판장), 김용관, 김경호 : 김영일 2심)

라) 친구가 주는 돈을 거절하기 힘들었을테니 선처...

- “피고인과 신동인은 약 20년전부터 종친회 등에서 만나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이였던 점...”(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김병운(재판장), 이명철, 이진석 : 신상우 1심)
- “정치자금을 제공한 신동인과는 친밀한 관계에 있는 점...”(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최완주(재판장), 김갑석, 박연주 : 신경식 1심)

마) 정치적 신념에 열중한 순수한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라 선처...

- “한나라당에서 대선자금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는다는 말을 듣고 이회창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는 믿음 속에서 기업들로부터 대선자금을 받기에 이른 점...”(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김병운(재판장), 이명철, 이진석 : 서정우 1심)

바) 죄는 미워해도 노약자이니 선처...

- “피고인은 56세로서 당뇨, 지방간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점...”(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황찬현(재판장), 조용기, 성언주 : 송영진 1심)
- “피고인이 만 66세 고령으로 고혈압·당뇨·뇌졸중·위염 등의 지병과 그 합병증으로 건강이 아주 좋지 아니한 점...”(서울고법 형사2부 전수안(재판장), 이범균, 심우용 : 박명환 2심)

사) 받은 돈이 남들보다 적으니 선처...

- “피고인이 받은 정치자금의 액수가 같은 대통령 선거 기간중에 저질러진 다른 정치인들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례에 비추어 그다지 많은 금액은 아닌 점...”(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김문석(재판장), 정연택, 조기열 : 박병운 1심)

아) 몰수추징할 것도 있으니 선처...

- “불법 수수한 정치자금 등을 전액 추징하게 되는 점을 참작...”(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김문석(재판장), 박연주, 조기열 : 박상규 1심)

자) 구속재판받느라 그동안 힘들었을테니 선처...

- “6개월 동안 구금생활을 했고...”(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이현승(재판장), 서보민, 김창권 : 서청원 1심)

차) 돈만 받았지 다른 범행은 없으니 선처...

-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 대가로 부정한 행위를 하지는 아니한 점...”(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김병운(재판장), 이명철, 이진석 : 이광재 1심)

카) 반성한다고 하니 선처...

- “이 사건 최후진술에서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김병운(재판장), 이명철, 이진석 : 서정우 1심)
- “피고인 잘못된 정치관행에 젖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면서...”(서울중앙지법 25부 이현승(재판장), 서보민, 김창권 : 최돈웅 1심)

타) 가져다 바치는 돈을 받았을 뿐이니 선처...

- “정치자금 지원을 요구하면서 강요나 회유를 사용하지는 아니한 점...”(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김병운(재판장), 이명철, 이진석 : 이광재 1심)
- “정치자금을 직접 요구하지는 않은 점...”(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최완주(재판장), 김갑석, 박연주 : 김종필 1심)

파) 다른 사람들도 선처해주었으니 당신도 선처...

- “다른 불법자금 수수 사건 양형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이현승(재판장), 서보민, 김창권 : 서청원 1심)

하) 전과 경력이 없으니 선처...

-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서울고법 형사1부 이주홍(재판장), 배호근, 임동규 : 여택수 2심)



눈에 띄는 잘못된

선처사유 3대 유형 (출처 : 각 사건 판결문)

1) '용두사미' 형 양형사유

- 양형사유를 제시하면서, 범죄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아주 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점을 세세히 역설해놓고서는 어느새 선처사유를 열거하며 꼬리를 내리는 유형

서울고법 형사4부 이호원(재판장), 김용관, 김경호(김영일 2심)

“원내 제1당이던 한나라당의 사무총장이면서 제16대 대통령선거 당시 한나라당 선거대책본부장 겸 회계책임자인 피고인이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 최돈웅, 대통령후보의 법률고문 서정우, 피고인의 지휘 아래에 있던 재정국장 이재현과 공모하여 기업들로부터 무려 700억 원에 달하는 정치자금을 불법적으로 수수하고 허위의 회계보고를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무거워 피고인은 중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이 최돈웅 등 한나라당의 국회의원들에게 대기업에 대하여 정치자금을 요구할 것을 독려한 점, 최돈웅, 서정우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당사 내에 쌓아두고 이를 집행한 점, 대통령선거 후 이재현으로 하여금 불법 정치자금과 관련된 회계관계서류를 폐기하도록 지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은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야당 사무총장 겸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서...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는데, 피고인 개인을 위하여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였다고는...소속 정당의 대선비용...사용하고 남은...채권을...반환한 점, 피고인이...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공직과 의원직을 성실히...기타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이 사건과 같은 불법 정치자금수수 범행의 법정형... 점

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3년 6월과 1,105,164,238원 추징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1심 징역3년6월→ 2심 징역2년)

서울고법 형사6부 김용균(재판장), 오준근, 김하늘(서정우 2심)

“피고인이 그 수수과정에서 기업관계자와 구체적인 방법을 미리 상의하여 결정하고 그로부터 현금을 실은 차량을 건네받아 이를 손수 운전하여 한나라당사에서 이재현에게 인계하는 등으로 가장 주된 역할을 담당한 것인 점, 이러한 불법정치자금의 수수는 정경유착으로 인한 국가적인 폐해로서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기업의 불투명 경영에 따른 국민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게 되므로 매우 비난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마땅히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당초 피고인이 자발적인 의사로 나선 게 아니라...개인의 이익을 위하여는 전혀 사용...피고인은 이회창...계속적인 친분관계를 유지...당선을 위하여 노력하는 과정에서...신망받는 법조인으로서 이 사회에 이바지...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1심 징역4년 → 2심 징역2년)

2) '황당무계' 형 양형사유 제시

- 선처의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을 선처의 사유로 제시하여 설득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 불법대선자금 조달에 나선 이유가 지지하는 후보를 돕기위한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은 설

- 득력이 전혀 없는 사유에 해당함
- 또 개인의 정치활동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정당의 정치활동을 위해서 저지른 ‘털사봉공’ 형 범행이라는 점 등을 선처이유로 제시하는 것도 설득력이 없는데, 오히려 정당의 주요 직책을 맡은 이가 자신이 맡은 공적인 업무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은 더 엄벌에 처할 이유로 보아야 할 것임
 - 선처사유로 채택하는 충분한 설명없이 단순히 ‘남다른 가정환경’ 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음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김병운(재판장), 이명철, 이진석(서정우 1심)

“...한편,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은...법관으로 근무할 당시 이회창 후보를 만난 것을 계기로 그와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오던 중 이회창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게 되자 그를 돕게 되었고, 당시 한나라당에서 대선 자금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는다는 말을 듣고 이회창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는 믿음 속에서 기업들로부터 대선자금을 받기에 이른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고법 형사4부 이호원(재판장), 김용관, 김경호(김영일 2심)

“피고인이 야당 사무총장 겸 선거대책본부장으로서...피고인 개인을 위하여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수수한 불법 정치자금도...소속 정당의 대선비용 및 정당운영비용으로 사용...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3년 6월과 1,105,164,238 원 추징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이대경(재판장), 임은하, 장성훈(김영일 1심)

“...남다른 가정환경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3) ‘인생역전’ 형 양형사유 제시

- 1심에서는 엄벌강조, 2심에서는 선처강조로 양형사유가 180도 뒤바뀌기도 함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황찬현(재판장), 조용기, 성언주
(박명환 1심 : 징역3년)

“피고인은 65세의 고령자로서...3선 국회의원으로 의정활동...금품공여자인 조용이와는...약 45년 된 친구 사이... 실제로 서울지방국세청 담당공무원의 직무에 미친 영향은 거의 없는...수사에 협조적으로 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도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3선 국회의원으로서 국정 전반에 관한 영향력을 행사...청탁을 거절하지 아니한 채 알선 사례금으로 6,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수수...실제로...알선행위에 나아감으로써, 직무의 청렴성을 지키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자신의 엄중한 사회적 책임을 망각...부정한 금원의 수수가 적발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그 잘못을 진실로 뉘우치지 아니하고...피고인을 음해하고 피고인의 출마를 저지하기 위한 제보에 의한 것이라고 탓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무거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일을 징역3년의 실형에 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VS

서울고법 형사2부 전수안(재판장), 이범균, 심우용
(박명환 2심 : 징역3년, 징유 4년)

“피고인이 국회의원으로 국정 전반에 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청탁과 함께 알선 사례금으로 6,000만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지만, 피고인이 만 66세 고령... 수사에 협조적으로...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 3선의 국회의원으로 의정활동... 장기기증운동의 디딤돌... 장학금을 조성...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봉사... 금품 공여자인 조용이와는... 친분이 두터운 사이... 실무자와의 연락을 주선함으로써 조용이로 하여금 실무자에게 서면으로 소명할 기회를 가지도록 하는 데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추징과 무관하게 조용이에게 6,000만원을 반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에 정한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황찬현(재판장),
조용기, 성언주(이상수 1심 : 징역1년)

“피고인은 새천년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의 총무본부장 및 회계책임자로서... 최소한의 비용 지출로 선거를 치르려고 노력... 과거 민주화운동에 진력한 공로... 3선 국회의원으로...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이...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정치

자금을 수수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불법 정치자금의 수수는 공정한 선거를 방해... 기업들에 대하여 막중한 경제적 부담... 손실을 고스란히 국민경제의 피해... 청산하여야 할 구시대의 악습인 불법 정치자금... 적지 아니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을 징역 1년의 실형에 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VS

서울고법 형사3부 신영철(재판장), 김수일, 정창호
(이상수 2심 : 징역1년, 징유3년)

“... 피고인이 기업들이 제공한 26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허위의 회계보고를 한 것은 중한 처벌을 면키 어려운 범행이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대선자금 관리라는 어려운 직책... 최대한 법을 지키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선거를 치르려고 노력... 3선 국회의원으로... 민주화운동에 노력하고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정치자금을 수수하거나 유용하지 아니한 점... 깊이 반성... 등의 제반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표. 조사대상 23건의 담당재판부와 선고형량

| 피 고 | 위반법률 |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 1심 선고 | 2심 재판부(서울고법) | 2심 선고 |
|-----|------------------------------|--------------------------------|--------------------------|-------------------------------|---------------------------|
| 김영일 | 정치자금법 | 형사24부(판사 : 이대경(재판장), 임은하, 장성훈) | 징역3년6월, 추징11억516만 | 형사4부(판사 : 이호원(재판장), 김용관, 김경호) | 징역2년, 추징11억516만 |
| 박명환 | 특가법(알선수제) | 형사21부(판사 : 황찬현(재판장), 조용기, 성인주) | 징역3년, 추징6천만 | 형사2부(판사 : 전수안(재판장), 이병균, 심우용) | 징역3년, 집유4년, 추징6천만 |
| 박주천 | 특가법(뇌물) | 형사24부(판사 : 이대경(재판장), 임은하, 장성훈) | 징역5년, 추징5천만원 | 형사1부(판사 : 이주홍(재판장), 배호근, 임동규) | 징역5년, 추징5천만원 |
| 서정우 | 정치자금법, 범죄수익은닉처벌법 | 형사23부(판사 : 김병운(재판장), 이명철, 이진석) | 징역4년, 추징15억, 몰수3억 | 형사6부(판사 : 김용균(재판장), 오준근, 김하늘) | 징역2년, 추징1억 |
| 신경식 | 정치자금법 | 형사22부(판사 : 최완주(재판장), 김갑석, 박연주) | 징역1년, 집유2년 | 형사7부(판사 : 노영보(재판장), 김명숙, 박이규) | 징역1년, 집유2년 |
| 안희정 | 정치자금법 | 형사23부(판사 : 김병운(재판장), 이명철, 이진석) | 징역2년6월, 추징12억1천만, 몰수수표1억 | 형사8부(판사 : 김치중(재판장), 조휴옥, 황현찬) | 징역1년, 추징4억9천만 |
| 여택수 | 정치자금법 | 형사23부(판사 : 김병운(재판장), 이명철, 이진석) | 징역1년 | 형사1부(판사 : 이주홍(재판장), 배호근, 임동규) | 징역1년, 집유2년 |
| 이상수 | 정치자금법 | 형사21부(판사 : 황찬현(재판장), 조용기, 성인주) | 징역1년 | 형사3부(판사 : 신영철(재판장), 김수일, 정창호) | 징역1년, 집유3년 |
| 이재정 | 정치자금법 | 형사24부(판사 : 이대경(재판장), 임은하, 장성훈) | 징역1년, 집유3년 | 형사3부(판사 : 신영철(재판장), 김수일, 정창호) | 벌금3천만 |
| 정대철 | 특가법(뇌물, 알선수제), 정치자금법 | 형사22부(판사 : 최완주(재판장), 김갑석, 박연주) | 징역6년, 추징4억 | 형사1부(판사 : 이주홍(재판장), 배호근, 임동규) | 징역5년, 추징4억1천만 |
| 최도술 | 정치자금법, 형법(업무상 횡령), 범죄수익은닉처벌법 | 형사23부(판사 : 김병운(재판장), 이명철, 이진석) | 징역2년, 추징16억1천4백만, 몰수CD3억 | 형사5부(판사 : 이홍권(재판장), 박평균, 조용현) | 징역1년6월, 몰수CD3억 추징15억5천9백만 |
| 최돈웅 | 정치자금법 | 형사25부(판사 : 이현승(재판장), 서보민, 김창권) | 징역3년 | 형사8부(판사 : 김치중(재판장), 조휴옥, 황현찬) | 징역1년 |

(이상 12건 : 2심까지 진행된 사건)

| | | | | | |
|-----|-----------------------------------|--------------------------------|---------------------|--|--|
| 김원길 | 정치자금법 | 형사22부(판사 : 최완주(재판장), 김갑석, 박연주) | 징역10월, 집유2년, 추징1억 | | |
| 김종필 | 정치자금법 | 형사22부(판사 : 최완주(재판장), 김갑석, 박연주) | 징역1년, 집유2년 | | |
| 박병윤 | 정치자금법, 범죄수익은닉처벌법 | 형사26부(판사 : 김문석(재판장), 정연택, 조기열) | 벌금 3천만 | | |
| 박상규 | 정치자금법, 범죄수익은닉처벌법 | 형사26부(판사 : 김문석(재판장), 박연주, 조기열) | 징역1년, 집유2년, 추징3억6천만 | | |
| 박주선 | 특가법(뇌물) | 형사21부(판사 : 황찬현(재판장), 조용기, 성인주) | 징역2년6월, 추징3천만원 | | |
| 서청원 | 정치자금법 | 형사25부(판사 : 이현승(재판장), 서보민, 김창권) | 징역1년6월, 집유3년, 추징12억 | | |
| 송영진 | 특가법(뇌물), 정치자금법, 형법(상습도박, 제3자뇌물약속) | 형사21부(판사 : 황찬현(재판장), 조용기, 성인주) | 징역6년, 추징2억 | | |
| 신계륜 | 정치자금법 | 형사24부(판사 : 이대경(재판장), 임은하, 장성훈) | 징역8월, 집유2년, 추징5천5백만 | | |
| 신상우 | 정치자금법 | 형사23부(판사 : 김병운(재판장), 이명철, 이진석) | 징역8월, 집유2년, 추징1억5천만 | | |
| 이광재 | 정치자금법 | 형사23부(판사 : 김병운(재판장), 이명철, 이진석) | 벌금3천만, 추징5백만 | | |
| 이한동 | 정치자금법 | 형사23부(판사 : 김병운(재판장), 이명철, 이진석) | 징역8월, 집유2년, 추징2억 | | |

(이상 11건 : 1심까지 진행된 사건)

자료. 23건의 판결문에 기록된 ‘양형사유’ 전문



2심까지 진행된

사건 12건 (2004. 10. 25 현재)

1) 김영일(정치자금법 위반)

1심 :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판사 : 이대경(재판장), 임은하, 장성훈)

“이 사건 범행으로 수수된 정치자금의 규모가 막대한 점, 그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전문적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실질적인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점, 불법 정치자금 수수는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여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기업들에게 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고, 결국 그 손실은 고스란히 국민경제의 피해로 귀결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정치권, 기업들 및 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이 심화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마땅히 그 행위에 상응하는 중형에 처해져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음성적인 선거자금이 수수되던 정치행태가 미처 다 청산되지 않았고 공식적인 후원금이 집권당으로 집중되던 상황하에서, 거대 야당의 사무총장 및 선거대책본부장이라는 직책을 맡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이고 피고인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은 아니어서 그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액면 합계 10억 원의 채권을 매도하여 그 대금을 계좌에 예치하여 놓은 것(피고인은 위 대금 상당액을 대한민국 앞으로 공탁하였다.) 외에는 판시 불법 정치자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거나 유용하지는 않았고 오로지 소속

정당의 대선자금 등으로 사용했으며, 사용하고 남은 삼성그룹 제공의 액면 합계 138억 원의 채권을 서정우를 통하여 삼성그룹에 반환한 점, 피고인은 검찰이 미처 인지하지 못한 일부 범죄사실을 수사과정에서 스스로 밝히는 등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수감년간 공직 및 의원직을 성실히 수행하여 온 경력과 남다른 가정환경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2심 : 서울고법 형사4부(판사 : 이호원 (재판장), 김용관, 김경호)

“원내 제1당이던 한나라당의 사무총장이면서 제16대 대통령선거 당시 한나라당 선거대책본부장 겸 회계책임자인 피고인이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 최돈웅, 대통령후보의 법률고문 서정우, 피고인의 지휘 아래에 있던 재정국장 이재현과 공모하여 기업들로부터 무려 700억 원에 달하는 정치자금을 불법적으로 수수하고 허위의 회계보고를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무거워 피고인은 중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이 최돈웅 등 한나라당의 국회의원들에게 대기업에 대하여 정치자금을 요구할 것을 독려했던 점, 최돈웅, 서정우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당사 내에 쌓아두고 이를 집행한 점, 대통령선거 후 이재현으로 하여금 불법 정치자금과 관련된 회계관계서류를 폐기하도록 지시한 점 등에 비

추여 보면, 피고인의 책임은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야당 사무총장 겸 선거대책본부장으로서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 사건 불법 정치자금수수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는데, 피고인 개인을 위하여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수수한 불법 정치자금도 액면 합계 10억 원의 채권매도대금을 은행계좌에 예치시켜 놓은 것 외에는 소속 정당의 대선비용 및 정당운영비용으로 사용하였으며 대통령선거 후 사용하고 남은 삼성그룹 제공의 액면 합계 138억 원의 채권을 서정우를 통하여 삼성그룹에 반환한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인지하지 못하였던 일부 범죄사실을 스스로 밝히는 등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십년간 공직과 의원직을 성실히 수행하여 온 경력 등을 비롯하여 기타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범행 당시 시행되던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이 사건과 같은 불법 정치자금수수 범행의 법정형이 ‘징역 3년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었던 점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3년 6월과 1,105,164,238원 추징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박명환(특가법 알선수재 위반)

1심 :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판사 : 황찬현(재판장), 조용기, 성언주)

“피고인은 65세의 고령자로서 고혈압, 당뇨, 뇌경색 등을 질병을 앓고 있는 점, 지금까지 약 12년간 3선 국회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하여 오면서 처벌받은 일이 없이 성실하게 재직하여 온 점, 금품공여자인 조용이와는 대학시절부터 교제해온 약 45년 된 친구 사이인 점, 피고인의 위 범행이 실제로 서울지방국세청 담당공무원의 직무에 미친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뇌경색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었음에도 퇴원한 이후 즉시 검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등 수사에 협조적으로 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도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3선 국회의원으로 국정 전반에 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서, 특별세무조사에서 선처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조용이의 청탁을 거절하지 아니한 채 알선 사례금으로 6,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서울지방국세청장 및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알선행위에 나아감으로써, 직무의 청렴성을 지키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자신의 엄중한 사회적 책임을 망각하고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게다가 피고인이 부

정한 금원의 수수가 적발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조용이로부터 받은 수표를 모두 현금처리하여 은행에 입금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잘못을 진실로 뉘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이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마포갑 지역구의 국회의원 공천 내지 출마를 노리는 측에서 피고인을 음해하고 피고인의 출마를 저지하기 위한 제보에 의한 것이라고 탓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무거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의 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 3년의 실형에 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 : 서울고법 형사2부(판사 : 전수안(재판장), 이범균, 심우용)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국회의원으로 국정 전반에 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서, 조용이로부터 특별세무조사에서 선처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알선 사례금으로 6,000만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지만, 피고인이 만 66세 고령으로 고혈압·당뇨·뇌졸중·위염 등의 지병과 그 합병증으로 건강이 아주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수사 당시 뇌경색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었음에도 퇴원하자마자 즉시 검찰에서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등 수사에 협조적으로 응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지금까지 약 12년간 3선의 국회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국내에서 최초로 사후의 장기기증을 서약하여 장기기증운동의 디딤돌을 놓고 사재를 털어 장학금을 조성하는 등 성실하게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봉사하였던 점, 금품공여자인 조용이와는 대학시절부터 45년 이상 교제해 오면서 피고인이 조용이의 가혼이나 조용이의 모친의 비문을 써 줄 정도로 친분이 두터운 사이이고, 조용이가 여러 차례 피고인에게 정치후원금을 준 바 있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은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으로 국세청과 업무상 연관 없어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알선행위도 억울함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면서 실무자와의 연락을 주선함으로써 조용이로 하여금 실무자에게 서면으로 소명할 기회를 가지도록 하는 데 그친 점, 주식회사 창윤에 대한 세무조사를 담당한 공무원 박정덕, 전명근도 세무조사 당시 선처 청탁이나 외부 압력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실제로도 오히려 조용이의 예상보다 많은 약 20억원의 세금이 부과되는 등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국세청 담당공무원의 직무나 국가의 조세징수권의 행사에 미친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추징과 무관

하게 조용이에게 6,000만원을 반환한 점, 본건으로 기소된 후 17대 국회의원 출마를 포기하였으며, 이미 6개월 이상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공인으로서의 윤리를 지키지 못한 데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에 정한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박주천(특가법 뇌물 위반)

1심 :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판사 : 이대경(재판장), 임은하, 장성훈)

“국회가 국정 전반을 감사함으로써 행정부를 감시 비판하고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제도인 국정감사는 그 업무의 특성이나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특히 공정하고 청렴한 업무의 수행이 요구되고, 청탁이나 뇌물로 인하여 그 업무수행이 얼룩지는 경우에는 감사 업무로서의 기능이 상실되는 것이며 이로 인한 피해는 중구적으로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터인데, 피고인은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므로 국정감사가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부정한 청탁이나 뇌물 등을 경계하라고 독려해야 할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신의 본문과 책임을 망각하고 오히려 그 스스로 재벌그룹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거액의 뇌물을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지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책임, 그로 인하여 사회에 미치는 폐해,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받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김윤규나 현대측에 대하여 먼저 뇌물을 제공하도록 요청하거나 유도한 사실은 없고, 현대측에서 자신의 판단하에 피고인에게 뇌물을 제공하였던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과 아울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내용,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수수한 뇌물의 가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요소들을 모두 참작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2심 : 서울고법 형사1부(판사 : 이주홍(재판장), 배호근, 임동규)
(피고측 항소기각)

4) 서정우(정치자금법 및 범죄수익은닉처벌법 위반)

1심 :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판사 : 김병운(재판장), 이명철, 이진석)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① 기업들로부터 받은 불법 정치자금이 합계 약 575억원에 이르는 점, ② 최돈용 등은 기업에 수십억원 내지 수백억원에 이르는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하여 기업들이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하기에 이른 점, ③ 피고인은 기업관계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의 제공을 제의받고 이를 곧바로 수락한 후 기업관계자들과 수차례 만나 그 수수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상의하여 결정하였고, 피고인이 직접 기업관계자들로부터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실은 차량을 전달받아 이를 손수 운전하여 한나라당에 인계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④ 기업관계자들이 공통적으로 피고인을 가장 확실한 대선자금 통로로 지목할 만큼 한나라당 내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였던 점, ⑤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채권을 수 차례에 걸쳐 은밀히 현금으로 교환하여 한나라당에 전달하는 등 단순한 전달자의 역할을 넘어 이 사건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깊숙이 관여한 점, ⑥ 그 수수과정을 보면 고속도로의 휴게소에서 은밀히 접선하여 차량을 인수하는 등 전문적인 범죄집단에서나 볼 수 있는 방식이었고, 결국 이러한 범행이 탄로남으로써 국민에게 심각한 충격과 실망감을 안겨 준 점, ⑦ 불법 정치자금을 받는 행위는 기업들로 하여금 비자금을 조성하게 만드는 등 기업회계를 문란하게 하고 경제를 어려움에 빠지게 하며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는 점, ⑧ 나아가 불법 정치자금은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여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책임과 비난가능성이 결코 작지 아니하다.

한편,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은 1966년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약 20여년간 법관생활을 하였고 그 후 변호사로 활동한 법조인으로서, 법관으로 근무할 당시 이회창 후보를 만난 것을 계기로 그와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오던 중 이회창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게 되자 그를 돕게 되었고, 당시 한나라당에서 대선자금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는다는 말을 듣고 이회창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는 믿음 속에서 기업들로부터 대선자금을 받기에 이른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법조인으로서 사회에 기여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최후진술에서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심 : 서울고법 형사6부(판사 : 김용균(재판장), 오준근, 김하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제16대 대통령 선거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후보의 법무고문의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당시 한나라당의 선거대책본부장인 김영일, 재정위원장인 최동용, 재정국장인 이재현 등과 공모하여 기업들로부터 무려 약 575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불법정치자금에 제공받은 것으로서, 피고인이 그 수수과정에서 기업관계자와 구체적인 방법을 미리 상의하여 결정하고 그로부터 현금을 실은 차량을 건네받아 이를 손수 운전하여 한나라당사에서 이재현에게 인계하는 등으로 가장 주된 역할을 담당한 것인 점, 이러한 불법정치자금의 수수는 정경유착으로 인한 국가적인 폐해로서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기업의 불투명 경영에 따른 국민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게 되므로 매우 비난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마땅히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불법정치자금의 수수에 관여하게 된 것은 당초 피고인이 자발적인 의사로 나선 게 아니라 기업측에서 먼저 피고인을 신뢰할 수 있다고 보아 한나라당에 대한 불법정치자금의 전달창구로 이용하려고 제의하여 온 데 따른 것인 점, 피고인은 기업들로부터 제공받은 불법정치자금을 자신의 개인적 용도나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는 전혀 사용한 바 없이 전부 그대로 한나라당에 전달하여 한나라당이 이를 대선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하게 한 것인 점, 피고인은 이회창이 대법관으로 재직할 무렵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그를 알게 된 것을 계기로 그와 계속적인 친분관계를 유지하게 되었고, 그 후 그가 제15대와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한나라당의 대통령후보로 출마하게 되자 그 후원회의 부회장 또는 법무고문을 맡아 그 후보의 당선을 위하여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불법정치자금의 수령에까지 이르게 된 것인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널리 신망받는 법조인으로서 이 사회에 이바지하여 왔으며 이 사건 재판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5) 신경식(정치자금법 위반)

1심 :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판사 : 최완주(재판장), 김갑석, 박연주)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정치자금을 제공한 신동인과는 친밀한 관계에 있는 점,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

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2심 : 서울고법 형사7부(판사 : 노영보(재판장), 김명숙, 박이규)

“피고인이 이 사건 정치자금 수수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바는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과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6) 안희정(정치자금법 위반)

1심 :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판사 : 김병운(재판장), 이명철, 이진석)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사단법인 참여사회 자치경영연구원의 사무국장으로 일할 당시인 2000.경 지인들로부터 함께 3억 9,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제16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새천년민주당 대통령후보의 비서실 정무팀장으로 일할 당시인 2002.경 기업체 등으로부터 함께 65억 6,5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16대 대통령 선거 이후에도 기업인들로부터 함께 4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였다는 것으로서, 불법 정치자금의 수수가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여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기업들에 대하여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고, 결국 그 손실은 고스란히 국민경제의 피해로 귀결되는 점, 피고인은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겠다는 참여정부를 출범시킨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국민에게 꿈과 희망이 아닌 실망과 허탈감을 안겨준 점,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공동피고인이던 강금원, 선봉술 등과 말을 맞추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바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할 것이므로, 그에 상응한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제16대 대통령 선거 당시 먼저 적극적으로 기업체 등을 상대로 불법 정치자금을 요구한 것은 아니고,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심 : 서울고법 형사8부(판사 : 김치중(재판장), 조휴옥, 황현찬)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사단법인 참여사회 자치경영연구원의 사무국장으로 일할 당시인 2000.경 지인 들로부터 합계 3억 9,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제16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새천년민주당 대통령후보의 비서실 정무팀장으로 일할 당시인 2002.경 기업체 등으로부터 합계 43억 7,5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16대 대통령 선거 이후에도 기업인들로부터 합계 4 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였다는 것으로, 이러한 불법정 치자금의 수수는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여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기업들에 대하여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고, 결국 그 손실은 고스란히 국민경제의 피해로 귀결되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통령선거 당시 새천년민주당 대 대통령후보 비서실 정무팀장으로 일하면서 공식적인 선거대책 위원회와는 별도로 대선자금을 모금, 관리, 집행하면서 이 사 건 범행을 저지른 점,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개인적인 목적으로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 당시 받은 불법정치자금은 대부분 기업측에서 스스로 제공한 것이고, 실제 선거비용으로 사 용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수수한 불법정치자금의 액수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7) 여택수(정치자금법 위반)

1심 :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판사 : 김병운(재판장), 이명철, 이진석)

“피고인은 대통령을 오랫동안 보좌한 최측근 중의 한 사람 이고 대통령이 ‘동지’라고 부를 정도로 강한 신뢰를 받는 등 누구보다 위와 같은 참여정부의 정책을 잘 알고 있고, 이를 앞장 서서 실천하여야 하며, 특히 청와대에 근무하는 공무원 신분으로서 청렴성과 도덕성을 엄격히 유지하여야 함에도 불 구하고, 이러한 신분과 의무를 망각한 채, 대기업으로부터 불 법 정치자금 3억원을 받은 행위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 니하다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 아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실망과 허탈감을 주었고, 나아가 참여정부의 도덕성에도 치명적인 상처를 안겨 주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시 기는 2003. 8. 하순 또는 같은 해 9월 초순인데, 그 직전 무 렵에 이른바 ‘세풍(稅風)’ 사건으로 1997년 대선 당시 불법 대선자금을 수수하였던 서상목, 이회성 등이 법원으로부터 무 거운 형벌을 선고받았고, 피고인과 함께 대통령의 최측근이라

고 불리는 안희정이 2003년 초경부터 이른바 ‘나라중금 퇴출 저지 로비의혹’ 사건으로 수사를 받다가 기소되기에 이르렀 으며, 피고인의 직속 상관이던 양길승 청와대 부속실장이 부 적절한 향응을 받아 사직을 한 것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직전 무렵이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대 기업으로부터 3억원이라는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거리낌없 이 받고 또 이를 위와 같은 사건으로 기소까지 된 안희정에게 건네준 행위는 법의 준엄함을 무시하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 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불법 정치자금 3억원 중 1억원을 유용하였다는 의심을 받고 있고, 그러한 의심을 뒷받침할 만한 상당한 정황사실이 인정되나, 그 정황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의 유용 사실을 인정하 기에 부족하여 위와 같이 판단하였을 뿐 모든 의혹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여기에 덧붙여 피고인은 대선 당시에 문병옥으 로부터 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도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인의 이 사건 범행은 통상적인 불법 정치자금 수수 범죄와 동 일하게 볼 수만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 서 피고인이 수수한 정치자금은 합계 3억 3,000만원으로 불 법 ‘대선자금’ 수십억 내지 수백억을 수수한 경우보다 그 액 수가 적은 점, 피고인이 민주화를 위해 오랫동안 기여해 온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모든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부득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 지 않을 수 없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심 : 서울고법 형사1부(판사 : 이주홍(재판장), 배호근, 임동규)

“피고인은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일 때부터 수행비서로 일하 였고, 참여정부 출범과 동시에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으로 근무하여 대통령을 보좌한 최측근 중의 한 사람으로서 주위의 주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특히 청와대에 근무하는 공무원 신분으로서 참여정부의 반부패정책을 앞장서서 실천하면서 청렴성과 도덕성을 엄격히 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 한 신분과 의무를 망각한 채, 대기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억원을 받아 정부의 정치개혁 의지나 도덕성, 신뢰성에 큰 타격을 주었고, 여기에다 이러한 기업으로부터의 불법 정치자 금 제공이 근절되어야 기업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정경유착의 고리를 차단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에 상응하는 처벌을 부과하여야 함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러나 신동인이 3억원을 민주당에 기부함에 있어 그 돈의 전달자로 피고인을 택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보면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전에 롯데

그룹측이 대선자금에 충분히 기부하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염려되어 3억원을 민주당에 제공하기로 하였는데 적당한 전달자를 찾을 수 없어 이른바 ‘배달사고’를 내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한 피고인을 정치자금의 전달자로 결정하게 되었고, 피고인을 선택하게 된 동기나 과정에 있어 피고인이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었다는 점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는다. 즉 롯데그룹측은 민주당에 후원금을 전달할 적당한 사람을 찾다가 피고인을 그 창구로서 이용한 것일 뿐 피고인 개인의 정치적 역량이나 인격, 식견에 신뢰를 보내거나 그 전망을 보고 피고인 개인에게 정치자금을 준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청와대에 근무한다는 점은 피고인이 정치자금을 받는데 큰 역할을 하거나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청와대의 힘이나 배경을 등에 업고 롯데그룹측에 먼저 정치자금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롯데그룹측의 선택에 따라 수동적으로 정치자금을 받은 점에서 보아 그러하다 하겠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정치자금의 뇌물성은 인정하기 어려운 바,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통상적인 불법 정치자금 수수 범죄와 동일하게 볼 수만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은 뇌물사건이 아니라,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는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소정의 절차규정을 위반하여 처벌받는 것이고, 한편 그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열린우리당은 피고인을 통하여 전달받은 3억원이 불법 정치자금으로 밝혀지자 그 돈을 모두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대학을 졸업하고, 생계를 위하여 비디오가게를 운영하다가, 버릴 수 없는 정치의 꿈을 피기 위하여 정치여정에 들어섰고,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과 함께 청와대에 들어가 공무원 신분이 되었기는 하나, 여전히 민주당 당직을 가진 정치인이라는 생각을 지니고 가볍게 처신하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이 사건으로 구속된 후 1심과 항소심을 통하여 수개월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청와대 행정관직을 사직하였으며,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일반적으로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에서는 그 액수와 개인적 용도에의 사용 여부 등이 가벌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여지는데, 이 사건은 드러난 여타 사건과 대비하여 그 액수나 사용처 등을 볼 때 상대적으로 높은 범주에 든다고는 보여지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8) 이상수(정치자금법 위반)

1심 :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판사 : 황찬현(재판장), 조용기, 성연주)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새천년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의 총무본부장 및 회계책임자로서 선거자금의 모금뿐만 아니라 지출까지 도맡아 처리하면서, 최소한의 비용 지출로 선거를 치르려고 노력하였던 점, 피고인은 과거 민주화운동에 진력한 공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제13대 국회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한 이후 3선 국회의원으로 약 16년간 정치활동을 하여 오면서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피고인이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불법 정치자금의 수수는 공정한 선거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기업들에 대하여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고, 결국 그 손실을 고스란히 국민경제의 피해로 귀착시키는 점, 피고인도 청산하여야 할 구시대의 악습인 불법 정치자금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적지 아니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의 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의 실행에 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 : 서울고법 형사3부(판사 : 신영철(재판장), 김수일, 정창호)

“새천년민주당의 국회의원이며 2002년 대통령선거 당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무본부장, 선거사무장 겸 회계책임자로서 후원금 등 선거비용의 수입 및 지출과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회계보고 업무 등을 총괄 담당하던 피고인이 기업들이 제공한 26억 원 상당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하고 허위의 회계보고를 한 것은 중한 처벌을 면키 어려운 범행이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2002년 대통령선거 당시 대선자금 관리라는 어려운 직책을 맡아 최대한 법을 지키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선거를 치르려고 노력하였던 점, 3선 국회의원으로 약 16년간 정치활동을 해 오면서 민주화운동에 노력하고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 온 점, 피고인이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정치자금을 수수하거나 유용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원심 판결 선고 후 17대 국회의원 선거의 옥중출마도 포기한 점 등의 제반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9) 이재정(정치자금법 위반)

1심 :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판사 : 이대경(재판장), 임은하, 장성훈)

“피고인은 이상수와 공모하여 자신이 사제로 봉직하였던 대한성공회 교회의 신도인 김현중에게 정치자금을 요구하여 10억 원이나 되는 거액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하였는바, 비록 피고인이 당시 정치자금에 대한 처리업무를 담당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요구에 의하여 김현중이 위 정치자금을 제공하였고, 피고인이 이상수에게 명시적으로 영수증처리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하는 등 불법한 정치자금임을 알려주어 결국 위 정치자금이 적법하게 처리되지 아니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의 역할이 결코 작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더구나 피고인은 위 정당에서 상당히 책임 있는 지위에 있었고, 피고인 스스로도 사제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현실에서 구현할 목적으로 정치에 투신하였다고 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의 다른 정치인들보다도 높은 도덕성을 견지하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등 깨끗한 정치를 펼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도리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 있고, 대통령선거자금에 대한 수사가 시작될 무렵인 2003. 9.경 이상수와 김현중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말하지 말라고 하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김현중에게 다시 사실을 말하지 말도록 종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후 이상수, 이한복, 이화영과 영수증 처리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책회의까지 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김현중으로부터 교부받은 채권을 즉시 그대로 소속 정당의 정치자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이상수에게 전달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사제로 봉직하면서 사회를 위하여 많은 봉사활동을 펼쳐왔던 점 등의 제반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심 : 서울고법 형사3부(판사 : 신영철(재판장), 김수일, 정창호)

“새천년민주당의 국회의원이며 2002년 대통령선거 당시 유세연수본부장이었던 피고인이 기업이 제공한 10억 원 상당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은 중한 처벌을 면키 어려운 범

행이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2002년 대통령선거 당시 정치자금을 담당하는 지위에 있지는 않았고,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먼저 이 사건 정치자금을 요청하였던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대통령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당의 선거활동을 도우려는 의도로 이 사건 정치자금을 수령한 후 이를 바로 정치자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던 이상수에게 전달한 점, 피고인이 정치활동을 하기 전 대한성공회 소속 사제로 봉직하면서 사회를 위하여 많은 봉사활동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정치활동을 중단하고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봉사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점 등의 제반정상을 참작하여 법정형 중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10) 정대철(특가법 뇌물 및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1심 :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판사 : 최완주(재판장), 김갑석, 박연주)

“뇌물수수의 점과 관련하여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서 공정하고 청렴하게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인인 윤창열에게 돈을 요구하고 윤창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후 이를 승낙하여 4억 원을 수수한 점에서 그 위법성이 매우 큰 것임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또한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정대철이 음성적인 선거자금이 수수되던 정치행태가 미처 다 청산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범하게 된 점, 불법 수수한 정치자금을 모두 민주당에 입금한 점, 수십년간 공직 및 의원직을 성실히 수행하여 온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나,

불법 정치자금의 수수는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여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기업들에 대하여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고, 결국 그 손실은 고스란히 국민경제의 피해로 귀결되는 점, 피고인 정대철이 먼저 적극적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요구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수수된 불법 정치자금의 규모가 매우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정치권, 기업들 및 사회전반에 대한 불신이 심화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정대철은 마땅히 그 행위에 상응하는 중형에 처해져야 할 것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학력, 경력, 가정환경 등 제반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심 : 서울고법 형사1부(판사 : 이주홍(재판장), 배호근, 임동규)

“피고인은 5선의 국회의원으로서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고

자 노력하였고, 나름대로 소명의식을 가지고 우리 나라 정치 발전에 노력을 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은 다른 일반적인 범법 행위와는 달리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민주당 대표최고위원 경선자금이나 민주당 대통령 선거자금에 사용할 목적으로 윤창열로부터 받은 4억원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하거나 민주당에 입금하였고, 정치자금법에 위반하여 수수한 돈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점, 윤창열로부터 굿모닝시티 건축허가와 관련된 부탁을 받고 돈을 수수하였지만 실제로 중구청장에게 알선하는 행위로까지 나아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윤창열로부터 받은 합계 4억 2천만원을 굿모닝시티 투자자협의회에 반환한 점, 음성적인 선거자금이 수수되던 정치행태가 미처 다 청산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이 사건 정치자금법위반의 범행을 범하게 된 점, 장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이 사건 정치자금법위반의 범행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도 유리한 정사는 있다.

그러나 알선수뢰의 점과 관련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2002년 당시 여당의 유력한 정치인이자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역구에서 대규모 상가를 분양하기 위해 사업을 준비하던 윤창열에게 돈을 먼저 요구하고 윤창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후 이를 승낙하여 4억원을 수수한 점에서 그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알선수뢰의 범행에 대하여 윤창열로부터 대가관계 없이 수수한 정치자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엄정한 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정치자금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불법 정치자금의 수수는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여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기업들에 대하여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고, 결국 그 손실은 고스란히 국민경제의 피해로 귀결되는 점, 피고인은 기업인들에게 먼저 적극적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요구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수수된 불법 정치자금의 규모가 매우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정치권, 기업들 및 사회전반에 대한 불신이 심화된 점, 우리 사회에 잔존하는 정경유착이라는 병폐를 청산하고 건전하고 깨끗한 사회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불법 정치자금의 수수에 대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따라 정치자금을 수수하였다는 점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

하다. 그리고 1995. 8.경 경성 이재학으로부터 고양시장에게 청탁하여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1천만원을 수수한 범행도 결코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정사에도, 피고인의 연령(60세), 경력, 건강상태, 법정태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11) 최도술(정치자금법, 범죄수익은닉처벌법 및 형법 업무상배임 위반)

1심 :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판사 : 김병운(재판장), 이명철, 이진석)

“① 피고인이 수수한 불법 정치자금이 22억 9,146만원의 거액에 이르는 점, ② 특히, 대선자금 채무가 없고 오히려 공식 대선자금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영로와 공모하여 대선자금 채무를 변제한다는 명목하에 기업인들로부터 약 17억원에 이르는 불법 정치자금을 거두어 들인 점, ③ 피고인이 청와대 총무비서관으로 공직에 취임하여 더욱 엄격한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점, ④ 위와 같이 수수한 불법 정치자금 중 일부를 피고인의 전세자금 또는 아파트 분양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점, ⑤ 위와 같은 불법 정치자금의 수수는 기업들로 하여금 비자금을 조성하게 만드는 등 기업회계를 문란하게 하고 경계를 어려움에 빠지게 하며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는 점, ⑥ 나아가 이는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점, ⑦ 선거 잔금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횡령하였고, 그 액수도 약 5억원에 달하는 점, ⑧ 여러 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을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등 자금세탁을 시도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책임과 비난가능성이 결코 작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받은 불법 정치자금 중 상당액은 선거비용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심 : 서울고법 형사5부(판사 : 이홍권(재판장), 박평균, 조용현)

“피고인이 수수한 불법 정치자금이 20억 상당에 이르는 거액인 점, 특히, 대선자금 채무가 없고 오히려 공식 대선자금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영로와 공모하여 대선자금 채무를 변제한다는 명목하에 대선 후에 기업인들로부터 약 15억원에 이르는 불법 정치자금을 거두어 들여, 그동안 정치권에서 선

거전에 관행적으로 불법정치자금을 받아오던 것과는 달리 이 사건의 경우 개인적인 금품수수의 성격이 강한 점, 위와 같이 수수한 불법정치자금 중 일부를 피고인의 전세자금 또는 아파트 분양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점, 선거 잔금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횡령하였고, 그 액수도 약 5억원에 달하는 점, 여러 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을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등 자금세탁을 시도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책임과 비난가능성이 결코 작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등의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2) 최돈웅(정치자금법 위반)

1심 :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판사 : 이현승(재판장), 서보민, 김창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제16대 대통령선거 당시 한나라당의 재정위원장이던 피고인이 선거대책본부장인 김영일, 이회창 후보의 법률고문인 서정우, 재정국장인 이재현 등과 공모하여, 기업들로부터 함께 580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인바, ① 피고인이 SK그룹에 대하여는 정치자금을 요구한 후 이를 직접 수수하였고, 삼성그룹과 엘지그룹에 대하여는 정치자금을 요구하여 그 기업들로 하여금 정치자금 지원을 결정하게 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② 불법 정치자금의 수수는 기업들로 하여금 비자금을 조성하게 만드는 등 기업회계를 문란하게 하고 경제를 어려움에 빠지게 하며 결국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는 점, ③ 나아가, 불법 정치자금은 정경유착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여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하는 점, ④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국민들이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심화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잘못된 정치관행에 젖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면서 정계를 은퇴한 점, 피고인이 3선의 국회의원으로 일하면서 국가와 사회에 기여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경력, 성행, 건강 상태 등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심 : 서울고법 형사8부(판사 : 김치중(재판장), 조휴옥, 황현찬)

“제16대 대통령선거 당시 한나라당의 재정위원장이던 피고인이 선거대책본부장인 김영일, 이회창 후보의 법률고문인 서정우, 재정국장인 이재현 등과 공모하여, 기업들로부터 함께 580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피고인이 SK그룹에 대하여는 정치자금을 요구한 후 이를 직접 수수하였고, 삼성그룹과 LG그룹에 대하여는 수차에 걸쳐 다른 기업들의 예를 들면서 거액의 정치자금을 요구하여 그 기업들로 하여금 정치자금 지원을 결정하게 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은 대통령 선거 당시 야당 재정위원장이로서 자신의 직책상 선거대책본부장인 김영일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이 사건 불법 정치자금 수수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피고인으로부터 대선자금제공을 요구받은 삼성그룹과 LG그룹의 경우 보안유지 차원에서 피고인을 신뢰하지 아니하여 서정우를 통해 대선자금을 제공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불법 대선자금 수사 당시까지도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정치자금을 수수하거나 유용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된 정치관행에 젖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면서 정계를 은퇴를 한 점, 3선의 국회의원으로 일하면서 국가와 사회에 기여한 점,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매우 나쁜점, 그밖에 피고인의 경력, 성행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3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1심까지 진행된

사건 11건 (2004. 10. 25 현재)

1) 김원길(정치자금법 위반)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판사 : 최완주(재판장), 김갑석, 박연주)

“피고인이 판시 제1죄로 받은 정치자금과 관련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정치자금을 제공한 박문수와는 절친한 사이이고 박문수는 사실상 민주당원과 다름없이 당무에 깊이 개입해 온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2) 김종필(정치자금법 위반)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판사 : 최완주(재판장), 김갑석, 박연주)

“불법 정치자금의 수수는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여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기업들에 대하여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고, 결국 그 손실은 고스란히 국민경제의 피해로 귀결되는 등 그 폐해가 막대하다. 피고인은 원로정치인으로서 투명한 정치문화의 형성에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직접 받았고, 그 액수가 적지 아니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므로 그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정치자금을 직접 요구하지는 않은 점,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초범인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3) 박병윤(정치자금법 및 범죄수익은닉처벌법 위반)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판사 : 김문석(재판장), 박연주, 조기열)

“이 사건 범행은 2002. 대통령선거에 즈음하여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고 정치자금의 공명정대한 운용 및 회계 공개를 통하여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열망하는 다수 국민들에게 크나큰 실망감을 안겨주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책임과 비난가능성이 결코 작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받은 정치자금의 액수가 같은 대통령선거 기간 중에 저질러진 다른 정치인들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례에 비추어 그다지 많은 금액은 아닌 점, 피고인이 받은 정치자금을 새천년민주당에 전달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박상규(정치자금법 및 범죄수익은닉처벌법 위반)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판사 : 김문석(재판장), 박연주, 조기열)

“일부 자금은 피고인이 워크아웃 상태에 있는 기업에 먼저 대선자금 지원을 요청하여 교부받았는바 이는 그 기업의 회생에 어려움을 주고 결국 국민경제에 피해를 끼치는 결과로 귀착되는 점, 적지 아니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여 정치자금의 공명정대한 운용 및 그 회계 공개를 통하여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열망하는 다수 국민들에게 크나큰 실망감과 배신감을 안겨준 점, 받은 자금 중 일부는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재 만 67세의 고령이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이후 정계에서 은퇴하기로 결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그 동안 국회의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으로서 국가에 헌신해 왔다고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범행전력이 없는 점, 위 불법 수수한 정치자금 등을 전액 추징하게 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박주선(특가법 위반)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판사 : 황찬현(재판장), 조용기, 성언주)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은 임건우나 현대건설 주식회사에 대하여 먼저 뇌물을 제공하도록 요청하거나 유도하지는 않았고 현대건설 주식회사가 그 필요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뇌물을 제공한 점, 피고인은 국회 정무위원회의 위원장이나 간사가 아닌 평의원으로서 이 사건 뇌물의 청탁 취지인 정몽헌 회장의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 무마에 대하여는 별다른 행위를 취하거나 노력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받은 이 사건 3,000만원에 대하여는 정치자금인 후원금으로 처리한 흔적이 보이는 점 등은 양형에 있어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한 것이기는 하나,

그러나, 피고인은 검사로서 재직하다가 대통령비서실 법무비서관으로 근무하였고 그 후 국회의원으로 활동하였는데 이 사건 3,000만원은 국회의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경력에 비추어 보면 그 준법성 및 도덕성의 요구 정도가 높아서 다른 공무원에 비하여 비난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이는 점, 특히 고위 공직자 또는 국회의원 등 정치인인 공무원이 범하는 뇌물죄는 그로 인하여 야기되는 사회의 폐해가 적지 아니하고 우리 사회의 잔존하는 부정부패의 원천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이는 점과 아울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요소를 모두 참작하여, 위 범정형에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다.”

6) 서청원(정치자금법 위반)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판사 : 이현승(재판장), 서보민, 김창권)

“협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되나 다른 불법자금 수수 사건 양형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씨가 6개월 동안 구금생활을 했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언론보도)

7) 송영진(특가법 뇌물, 형법 제3자뇌물약속, 정치자금법 및 형법 상습도박 위반)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판사 : 황찬현(재판장), 조용기, 성언주)

“피고인은 제16대 국회의원으로 국회 건설교통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대우건설과 현대건설이 국정감사에서 거론될 수

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이용하여 대우건설로부터는 2억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현대건설로부터는 제3자인 남선건설의 윤정호 사장에게 100억 상당 건설하도급공사를 낙찰받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 상당의 뇌물 공여를 약속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인이 쉽게 출입할 수 없는 미8군 영내 카지노장에 드나들면서 상습도박행위를 하고, 정당국고보조금이나 후원회의 후원금으로 강원랜드에서 차용한 도박자금을 변제하였으며, 그 회계처리를 위하여 회계장부에 허위기재하고 허위 회계보고를 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을 국회의원으로 선출한 국민들이 피고인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갖추어야 할 것으로 예상하였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저버린 채 일반국민들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보여준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56세로서 당뇨, 지방간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점, 2선 국회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하여 오면서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국회의원 불출마 선언을 하였으며, 더 이상 정치인으로서의 활동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력, 전과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공판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와 같은 형에 처하기로 한다.”

8) 신계륜(정치자금법 위반)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판사 : 이대경(재판장), 임은하, 장성훈)

“참다운 민주주의의 구현과 진정한 정치개혁은 온 국민의 정치권에 대한 요구이자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대세이고, 이를 위하여 가장 시급히 청산되어야 할 과제는 정치인과 기업인 등 경제적 강자와의 ‘정경유착’, 즉, 불법정치자금 수수의 관행이라 할 것이다. 무릇 정치인은 경제적 강자와 유착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불법정치자금의 유혹에 많이 노출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불법정치자금 수수의 관행을 과감히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인 스스로의 각고의 노력이 요망된다 할 것이나, 정치인이 위와 같은 시대적 요망에 부응하지 아니하고 자신이나 자신이 소속한 정당의 이익만을 앞세워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경우에는 비록 그 액수가 크지 아니하거나 과거의 다른 정치인들의 관행에 비하여 사안이 가벼워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김영훈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할 것을 요청하거나 유도한 바 없고, 김영훈이 자신의 판단하에 피고인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 정치자금에 대하여 수사기관 등에서 그 혐의를 인지하지 못한 시점이었음에도 김영훈이 위 각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을 빌미로 부정한 청탁을 하자 이를 거절하고 수령한 정치자금 중 상당액을 반환하였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기로 한다. 위의 각 양형조건을 비교 형량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9) 신상우(정치자금법 위반)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판사 : 김병운(재판장), 이명철, 이진석)

“불법 정치자금의 수수는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여 민주주의의 발전

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기업들에 대하여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고, 결국 그 손실은 고스란히 국민경제의 피해로 귀결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과 신동인은 같은 양산 신씨로서 약 20년 전부터 종친회 등에서 만나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이였던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므로,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0) 이광재(정치자금법 위반)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판사 : 김병운(재판장), 이명철, 이진석)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2002년 대선 당시 썬앤문그룹의 문병욱 회장으로로부터 1억원, 같은 그룹의 부회장이던 김성래로부터 500만원 합계 1억 5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였다는 것으로, 이러한 불법 정치자금을 받는 행위는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여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책임과 비난가능성이 결코 작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수한 정치자금의 액수가 같은 대선기간 중에 저질러진 다른 정치인들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례에 비추어 그다지 많은 금액은 아닌 점, 피고인이 문병욱에게 정치자금 지원을 요구하면서 강요나 회유를 사용하지는 아니한 점, 문병욱은 노무현 대통령의 동창으로서 위 요구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위와 같은 정치자금을 지원하였고, 김성래 역시 자발적으로 피고인에게 정치자금을 지원하였던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 대가로 부정한 행위를 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위 수수한 금액 중 1억원은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아니하고 안희정에게 그대로 전달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수수한 금액 중 일부는 받지 아니하였고 부인하는 부분도 있으나 이는 전체 액수에 비하여 적은 부분에 해당하고 이 사건 범행의 주된 부분인 1억원 수수 사실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1) 이한동(정치자금법 위반)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판사 : 김병운(재판장), 이명철, 이진석)

“피고인은 제16대 대선에 출마한 후보자로서 SK그룹으로부터 불법 대선자금 명목으로 2억원을 수수하였다. 이러한 불법 정치자금을 매개로 한 정경유착은 우리 사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의 형성과 민주적인 정치발전을 가로막는 중대한 장애 요소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풍토가 한층 성숙하게 발전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정경유착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고, 불법 정치자금의 수수 행위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수수한 이 사건 정치자금이 같은 시기에 저질러진 다른 정당의 불법 대선자금에 비하여 그 규모가 적은 점,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자신이 인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참여연대와 싹 틔우는 희망 '유통기한은 없습니다'



부패추방 및 부패방지법 제정운동, 재벌개혁을 위한 소액주주운동,
핸드폰 요금인하 및 시민권리찾기운동,
삼성그룹의 편법증여와 탈세에 대한 세금부과 촉구 등 조세개혁운동,
썩고 낡은 정치인들을 몰아내자는 두 번의 낙선운동,
이라크 침략전쟁 반대와 한반도 평화군축을 위한 반전평화운동,
최저생계비/최저임금 인상 캠페인 등 사회복지운동

...

벌써 10년입니다.

“아직 남은 빈자리를 채워주실 더 많은 회원들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02•723•4251

e-mail : mc@pspd.org

www.peoplepower21.org

사법감시시에 힘을 보태주세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1994년 9월 참여연대 창립과 더불어
인권옹호와 사법정의 실현 및 사법영역의 시민참여를 목표로 발족했습니다.
사법감시센터는 지난 10여년간 일관되고 꾸준한 활동을 통해
시민운동의 불모지였던 사법영역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감시를 일구어왔습니다.



사법감시센터는
시민의 감시와 참여의 무풍지대였던 법조계에 대해 체계적인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이 내용을 정리하여 모니터 대상이 되고있는 법조인들에게 제공하는 매체인 **사법감시시**를
95년 10월부터 발행해왔습니다.



사법감시시는 현재 전국의 판사와 검사에게 발송하고 있으며,
변호사와 법학자 등에게는 전자우편으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행된 **사법감시시**는
참여연대 웹사이트(www.peoplepower.org) 자료실에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사법감시센터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후원으로 **사법감시시**를 발행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참여연대 회원(후원부서 : 사법감시센터)으로 가입해주세요.

후원계좌 : 우리은행 513-088742-13-101 (예금주 : 참여연대사법감시)

회원가입 : 전화 02-723-0666(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발송비 절감 등을 위해 변호사와 법학자뿐만 아니라
법원과 검찰에서 근무하는 분들께도
사법감시시를 전자우편으로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전자우편 발송신청 jwc@pspd.org